

의안번호	2200955
의 퇴 인	김희정의원
회 답 일	2024. 8.19.
추 계 번호	24D12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1항 (의료지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¹⁾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²⁾ 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사항”)의 비용이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제1항(의료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비급여 사항 비용 지원
(안 제7조제1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중 비급여 대상자 수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³⁾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2)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과 환자 간에 직접 징수하고 있고, 청구 현황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비급여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

3)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만 감면 지원하고 있음